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소 방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장 용 대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동의안은 2010년 5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6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서, 시·도 의회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('06.12.20. 개정, 부칙에서 '10. 7. 1. 설치토록 규정)
- 도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의회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,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 근법령 명시 문구 중 「지방자치법」 외에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문구 추가 (안 제1조)
-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에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 외에 「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 문구 추

가 (안 제5조)

- 목적조항(제1조) 이후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 사용 등 일부 문구 수정

4. 검토의견

이번에 개정하는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설되는 「교육위원회」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수를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 두려는 것임.

주요내용으로는

-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위원회 의사국이 폐지됨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7명을 충청북도의회 사무처내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인 전문위원에 대한 정수관리 근거규정, 사무직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, 안 제5조에 추가하고,
- 안 제2조 제3항에 “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문화 하고 그 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이 2010년 2월 2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였던 충청북도교육청내에 교육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의사국이 폐지되고 충청북도의회내에 교육위원회와 전문위원실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,

-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인 전문위원실 정원을 7명으로 하여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」를 일부개정중에 있음.
 - 충청북도의회에서는 교육과 학예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「충청북도 위원회 조례」를 2010년 5월 14일 개정 공포 하였음.
 - 따라서,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사무처기구에 교육위원회 사무처리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실 조직과 정원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하고, 정원의 관리기관으로 충청북도의회로 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은 적합한 조치라 판단됨.
 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이 2010년 2월 26일 개정된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은 2010년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되었고,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 4월 26일 시도에 「 시도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설계 및 정원 운용방안 안내」를 통보함.
- 또한 개정전 조례에서 제6조(시행규칙)에 두었던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을 두는 조항을 안 제2조 제3항으로 신설하는 것으로
- 자치법규의 구성 및 규정순서는 명문상 일정한 기준은 없으나 조문을 배열할 때 형식적 배열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제2조 제명을

「사무처의 설치」에서 「사무처의 설치 등」으로 확대하여 사무분장 사항까지 규정하려는 것과

- 제2조 제3항에서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제6조(시행규칙)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제6조에서 정하는 규칙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.

붙임 :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